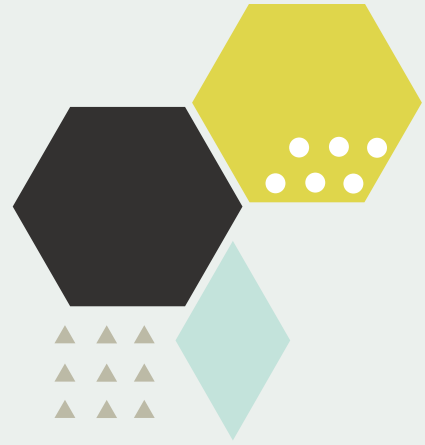




ISO 37001 부패 방지경영시스템의 이해

KCCA 검증심사원 황선영

ISO 37001 8장 운용



제 8장 운용

이번에는 제8장 전반부에 이어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패방지에 대한 의지표명, 선물·접대 등의 방지절차, 부패방지 통제관리의 불충분, 우려사항제기 및 부패조사를 다루고자 한다.

부패방지에 대한 의지표명

중간 이상의 부패 리스크에 있는 비즈니스 관련자에 대해,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부패방지에 대한 비즈니스 관련자의 의지표명과 부패가 발생한 경우, 비즈니스 관련자와의 관계 종결 가능함을 요구할 것을 ISO 37001 표준은 요구하고 있다.

부패방지에 대한 의지표명을 요구해야 하는 대상은 중간 이상의 부패 리스크를 야기하는 비즈니스 관련자이고 이 대상이 무조건 그러한 의지표명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이 가능한 범위에 있어야 한다.

앞서 우리는 실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들어 실사 제외 대상을 정하는 것을 얘기했었다.

예를 들어, '공직자등'에 해당하거나 보건의료전문가 또는 월등히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비즈니스 관련자에 대한 의지표명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련자는 실행 가능한 범위에 있지 않다고 봐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가장 근본적인 사항은 비즈니스 관련자의 부패방지에 대한 의지표명이나 거래의 종결과 관련하여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이다.

그 방법은 비즈니스 관련자와 계약 시, 계약내용에 부패행위의 금지, 부패방지 법규의 준수, 부패방지 관련 교육의 실시, 위반 시 계약의 종료를 포함하는 계약조항을 계약서에 넣거나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부패방지 서약서를 받는 것이다.

선물, 접대, 기부 및 유사한 편익

조직은 선물, 접대, 기부 및 유사한 편익(이하 "선물, 접대 등"이라 함)의 제안, 제공 또는 수락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실행해야 한다.

과연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가 막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부패방지를 담당하는 실무자라면 적어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하는 '금품 등'의 수수 시 처리절차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에 따라 이러한 절차는 필수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위반 시에는 징계, 벌칙 또는 과태료(또는 징계부가금)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에게 '금품등'이 접수되었을 때,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접수된 '금품등'이 처리된다.



기업의 경우, 내부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기는 하나 공직자 등에 비하여 선물, 접대 등과 관련한 사항은 강하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선물, 접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선물, 접대 등은 부패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ISO 37001 표준도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된 절차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부패방지 관리의 불충분에 대한 관리

ISO 37001 표준의 제8.8항은 개인적으로 참 어렵게 해석된 것 중 하나로 보인다. 어쨌든 ‘Managing inadequacy of anti-bribery controls’를 ‘부패방지 통제수단의 불충분에 대한 관리’로 해석해야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

그 내용을 보면, 특정 거래, 프로젝트, 활동 또는 비즈니스 관련자에 대한 실사결과, 현재 통제수단으로 부패 리스크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된 경우에 있어, 추가적인 통제나 조치를 실행할 수 없거나 실행하고자 하지 않는 경우 거래 등의 종결, 보류, 취소, 거절 등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우려사항 제기

우려사항 제기로 일컬어지는 내부신고에 대한 사항은 다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부신고내지 보고가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고 항상 보고자에 대한 신원이 보호되며 신고에 대한 보복 즉, 불이익이 금지되어야 한다.

내부신고와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참고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지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려제기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가 작년 말에 있었다. 그것은 2019년 분야별 공익신고 접수현황이다.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중 건강분야가 1,013건으로 2위인 안전분야의 781건을 제치고 1위에 등극했다. 이는 앞으로 수사기관이나 규제기관의 수많은 조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TIP. 공익신고는 기업의 대표자나 사용자에 대한 신고를 포함하며 467개 법률의 위반에 대하여 공익신고가 가능하다. 공익신고 방법,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의 보호, 보상 및 벌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려제기의 절차를 수립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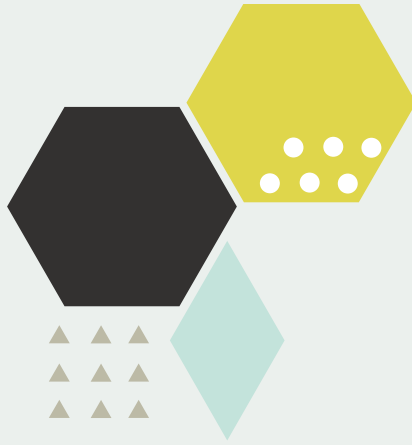
부패의 조사 및 조치

ISO 37001 표준은 조직이 부패관련 신고와 관련한 조사, 조사자에 대한 권한부여, 관련 인원의 조사협조, 조사현황 및 결과의 보고, 조사의 기밀유지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 및 운용함에 있어 이러한 절차의 실행을 위한 절차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TIP. 부패조사 및 조치와 관련한 절차서를 마련하는 경우, 단순히 신고나 보고된 내용에만 한정하지 않고 탐지된 부패행위나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패의 조사 및 조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를 진행하는 인원의 독립성이며 조직은 조사를 담당하는 인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조사현황이나 결과를 보고받는 주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조직은 조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 외부의 비즈니스 관련자로 하여금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WWW.KCCA.KR